

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연종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수행사업을 조례상에 명확히 정비하고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 및 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, 소상공인 지원 사업, 청년과 관련된 사업 지원 규정 신설(안 제3조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함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학)

가. 제출배경

- 소상공인·청년,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현재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조례에 그 근거 마련되어 있지 않음
-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진흥원의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,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2조는 소상공인 및 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
 -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
 - “청년”이란 「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함
- 안 제3조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들을 정비한 것으로 산업 변화에 맞춰 일자리 창출, 소상공인 지원*, 청년 지원 사업**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,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임

[* 소상공인지원센터]

- 센터개소 : 2021. 7. 14.
- 조직구성 : 1팀 3명(센터장/부장 겸직, 팀장 1, 팀원 2)
- 예산액 : 266,996천원
- 주요기능 : 소상공인 현황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기반 마련 및 맞춤형 사업 추진
창업·경영개선 지원 및 컨설팅 운영, 정보지원 등
전문가 컨설팅 등 지역 소상공인 종합 거점 역할 수행

[** 청년지원부]

- 「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2016년 청년희망센터 개소
- 청년지원업무 지속 증가함에 따라 2021년 부서 신설 (청년희망센터 → 청년지원부)
- 예산액 : 14,063백만원
- 청년일자리 지원, 청년단체(취.창업 동아리, 상인회 등) 지원, 청년희망센터 운영
청년센터(고용부 사업) 운영,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지원 등

-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,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 지원 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, 입법내용의 정당성, 정책적 타당성이 적절하다고 사료됨
- 사업 수행 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의 계속성·안정성 확보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청년지원,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